

제 2종 医保組合別
給与 제한내용
熟知요망

본회는 제 2종 의료보험조합의 급여 제한내용이 각 조합의 定款에 의해 새로이 정해짐에 따라 규정된 기준에 의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소록 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초 문화예술인 조합 이·미용사조합, 숙박목욕업 조합등의 제 2종 의보조합이 각각 보험급여에 대한 기준을 정관에 의해 규정하여 이미 새로운 기준에 의해 의료 기관에서 시행 중인바 아직 일부요양 기관에서 이를 未熟,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취해진 조치인데 각 조합별 규정된 급여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給与 확인用 補完資料
제출, 簡素化

보험자 단체에 건의

보험자로부터 적정급여 확인을 위해 요양취급기관에 요구되는 보완자료의 제출에 있어 일정한 서식 통일등의 간소화 방안이 요망되고 있다.

이는 진료비심사기관이나 의료보험조합이 소속피보험자나 피부

조합별 보험급여 제한내용

조합 구분	문 화 예 술 인	이·미용	대한숙박목욕업
정관개정일	'84. 7. 4	'84. 7. 1	'84. 7. 5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 급여 제한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가입후 최초 3개월간 피보험자,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제한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가입후 최초 3개월간 피보험자,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제한 ○신규가입후 6개월간 100만원까지만 조합 부담.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가입후 최초 3개월간 피보험자,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제한 ○가입신고 저체기간이 6개월이상인자에 대하여는 6개월간 입원진료제한
조합가입진 질병에 대한 급여제한 (신규가입자에 한함)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다음 상병의 진료는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킴 ('84. 8. 1) 1) 만성신부전증수술 및 투석요법 2) 심장수술 3) 선천성 기형수술 4) 암(악성종양)수술 및 치료	과 동	과 동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자는 보험료완납 일로부터 3개월간 입원진료 제한 ○미납자 검인불허	○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자는 체납보험료 완납후 1개월간 입원제한 ○미납자 검인불허	○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자는 체납보험료 완납후 3개월간 입원진료제한 ○미납자 검인불허

조합 구분	전국고물상	대 구 상 인	전 국 택 시	추 산 기 업
정관개정일	'84. 7. 6	'84. 7. 6	'84. 9. 18	'84. 3. 28

양자에 대한 적정급여 여부를 확인한다는 목적하에 해당요양취급기관에 대해 진료기록부등의 관계자료를 전량(全量)요구하는 사례가 잦아 복사비용 및 우송료의 부담뿐만아니라 과도한 의료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

으로 이에대해 본 회를 비롯한 보사당국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완자료의 요구시에는 일정한 서식 통일등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줄것을 보험자 단체에 수차례 건의및 촉구한 바 있다.

병원정화위원장 교육 실시

또한 본회는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조정 內譯 통보에 있어서도 청구한 진료비 명세서와 비교하여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심사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병원윤리 확립을 위한 의료인 役割과 의료기관 정화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병원정화위원장 교육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180여명의 병원장 및 각 시도·구 의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회정화운동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최초 3개월간 피보험자, 피부양자의 입원진료 제한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가입후 최초 3개월간 피보험자,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제한.	운영위원회의결로서 일정기간 입원진료를 제한할 수 있다.	자영업개시 후 1개월후 자격취득신고서는 입원진료를 3개월 이내에 제한
조합가입전 질병에 대한 급여제한 (신규가입자에 한함)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다음 상병의 진료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예외시킴 ('84. 8. 1) 1) 만성신부전증 수술 및 투석요법 2) 심장수술 3) 선천성기형수술 4) 암(악성종양)수술 및 치료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일 이전에 발생한 상병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상병은 보험급여를 아니할 수 있다.	없 음	없 음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 6개월이상 체납자는 1개월간 입원제한 ○ 미가입자 급여제한	○ 2개월이상 체납자는 보험료 완납한 날로부터 체납기간의 1/2기간 동안 입원진료 제한	○ 미납자점인분허 ○ 1년이상 체납자는 완납후 5개월 입원진료 제한 ○ 1년미만 체납자는 완납후 3개월 입원진료 제한	○ 3개월이상 체납자가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시 1개월이내에서 입원진료를 제한할 수 있다.

의 이념과 방향 그리고 의료윤리 命常任理事(한림의대부속한강성심병원장)의 「병원윤리강령실천」으로 특강 및 종합토의로 진행되었는데 종합토의에서는 본회 金敎

구급차 환자이송료 징수 合法化

구급차 운행시 實費 혜택 부여키로

병원구급차의 환자이송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이송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본 회는 그간 자가용 구급차의 환자이송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할 수 없다)」에 의거 이송에 따른 正當한 實費마저 징수할 수 없어 구급차 운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으며 이와관련 일부병원에서는 구급차의 운행정지처분까지 받은 사실을 중시하고, 환자보호와 구급차 운행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관계당국과 수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이에대한 해결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보사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자가용구급차 유상운송허가 지침은 다음과 같다.

자가용 구급차 유상운송 허가지침

1. 목 적

자가용 구급차의 유상운송 허가로

○환자보호 및 구급차 이용 편의

○구급차 운용의 합리화

2. 근 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3. 유상운송 허가신청인:

의료관계 단체가 일괄 신청(대행)또는 구급차를 소유

한 의료기관

4. 유상운송 차량:

의료기관 소유 자가용 구급차.

5. 유상운송 대상 및 범위

가. 타관할 구역으로 운행시(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군별로 정한다. 다만, “군”지역내에 “시”가 소재할 경우에는 같은 관할구역으로 하되, 그 시가 2개이상 군에 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타의료기관으로 이송시

다. 입원환자의 퇴원시(환자가 구급차 사용을 요구할 경우)

6. 허가 및 조건

가. 허가절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규정에 의함.

나.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당해 허가 구급차가 소유권을 달리하거나 용도폐지시까지

다. 조건

1) 당해허가 구급차가 용도 폐지되거나 소유권을 달리할 경우 유상운송 허가실효조치

2) 종합보험에 가입

7. 대가수수

가.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시·도 지사가 정하되, 운송대가 산정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이익배제).

(1) 차량유지원가(세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운전사 급여등)

(2) 유류대(왕복)

나. 의료인(의사, 간호원)이 상승하여 이송간응급 처치한 치료 및 약품대는 별도

8. 행정사항

가. 유상운송의 대상, 범위 및 조건등을 충실히 이행토록 지도 감독 철저.

나. 년 1회 유상운송 허가대상차량 추가작성신청(대행): 의료관계 단체일괄신청시

다. 의료기관별로는 수시 신청및 허가

라. 유상운송 허가 취지의 계몽

'84대한적십자사 포장 수여 서울대병원 민병일교수

'84년도 대한적십자사 포장에 서울대병원 구강외과 민병일교수가 악안면 영역손상환자 치료 및 구개파열환자의 무료수술에 대한 공로로 박애장 은장을 수상했다.

경찰의날, 受賞

본회 韓炳秀部長

본 회 韓炳秀調査研究部長이 지난 10월 21일 39돌을 맞는 경찰의날을 맞아 그간 경찰행정업무에 奮與한 공로로 치안본부장으로 부터 감사장을 받았다.